의안번호	제 537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12 월 21일 (제352회)

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발 의 자	임병운 의원 등 9인
발의연월일	2016년 12월 21일

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537

발의연월일 : 2016년 12월 21일
발 의 자 : 임병운,김인수,엄재창,황규철
이의영,임회무,이광희,박우양
김영주 의원

□ 주 문

○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

□ 제안이유

○ 주요 안건 의결을 위해「지방자치법」제42조 제2항 및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제7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□ 참고사항

○「지방자치법」제42조

○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제73조

붙임 :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부.

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 및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제1항에 따라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◇ 출석일 :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일

- **'17. 1. 16.(월) 14:00(제1차 본회의)**
- **'17. 1. 25.(수) 10:00(제2차 본회의)**

※ 의사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개의일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추가 및 변경된 날을 출석일로 함

◇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
◇ 출석이유

- 대집행부질문·답변
- 주요 안건처리 등

◇ 출석대상

- 충청북도지사, 충청북도교육감
- 「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부지사·부교육감, 도지사의 보조 및 보좌기관 중 실·국·원·단·본부장, 충북도립대총장,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, 정책기획관, 공보관, 여성정책관,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국장·감사관·기획관

※ 그 외 대집행부질문 답변 대상자 포함

참고사항(관계법령)

□ 지방자치법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

제73조(도지사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, 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가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가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